

'25.12월 전문가 자문단 주요 상담사례 [2건]

1. 약식명령(벌금 100만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

상담요청

건설공사 관련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 문의

□ 상담내용

- 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 여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정식재판 청구서 법원 제출) 재판 진행, 미청구 시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 참고로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벌점 부과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발주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로 원도급사에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 해지(타절) 가능 여부 등

상담요청

하도급사가 부도·연락두절·건설업 면허 말소 등으로 공사지연 및 중단된 상황으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하도급사가 제출하고 발주처가 승인·검사 완료한 기성공사내역에 오류(허위 또는 오기성 등 과기성 발생)가 있어 잔여공정의 물량이 맞지 않아 후속공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준공을 촉구하고, 계약해지 통보함

- 1)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공사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 2) 발주처가 과기성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잔여 공정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치 없이 원도급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 3) 발주처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도급사에 계약해지(타절)이 적법한지?

□ 상담내용

1) 지체상금 부과 타당성 및 지체상금 부과 대상

-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발주처의 부실한 기성검사 및 후속조치 미비에 있으므로 원도급사에게 지체상금 책임을 묻는 발주처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사건 발주처 상위기관의 감사결과에도 담당 공무원의 감독 및 검사 의무 위반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

- 설령 원도급사에게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성부분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과기성의 책임소재

- 이 사건 상위기관의 감사결과, 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일차적 책임은 발주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발주처가 과기성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변경이나 물량 재산정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원도급사에게 공사 재개를 압박한다면, 사실상 계약상 근거 없는 의무를 원도급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조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발주처의 계약 해지(타절) 적법성

- 귀사의 공사 중단이 발주처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기성’ 문제로 인하여 후속 공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면,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위법·부당하여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